

대전지방법원 2023. 6. 21 선고 2022나111453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이현주

피고, 항소인 A

변 론 종 결 2023. 5. 10.

판 결 선 고 2023. 6. 21.

제1 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2가소128676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2022. 5. 20.'을 '2022. 4. 25.'로 경정한다.

청 구 취 지 와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713,843원과 이에 대하여 2022. 4. 1.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6. 20. B과 피고 소유 전북 완주군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10만 원, 임대기간 2018. 6. 27.부터 2020. 6. 2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18. 6. 27. B에게 전세자금 대출로 임대차보증금 중 2,8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B의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다. B은 2018. 6. 22.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B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는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

라. B은 E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22. 3. 31. E에게 대출원금 2,800만 원과 지연이자 1,713,843원 합계 29,713,843원을 변제하였다.

마. B은 2019. 4. 2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갑1~7호증, 을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의 보증인으로 E에 대위변제한 대출원리금 29,713,843원을 B에게 구상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피고는 B이 원고에게 위 구상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승낙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 29,713,843원과 이에 대하여 B이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2. 4. 1.부터 지급명령 송달일인 2022. 4.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2022. 4. 2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9. 4. 22.경 B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E이나 원고는 피고에게 전세자금 대출 관련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고, 임대보증금 지급시에 입금자를 B으로 표시한 잘못이 있으므로, B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반환한 피고에 대하여 다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에 더하여 원고가 B에게 대출금의 추심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대출금 상당의 임대보증금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피고가 B과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양수를 승낙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가 B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으로 채권 양수인인 원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절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의 나머지 주장은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법률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의 '2022. 5. 20.'은 '2022. 4. 25.'의 오키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선용, 판사 김주연, 판사 조길상